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기택 외 5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204277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회사가 설정·운용하는 '◇◇◇ 펀드 제48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나. 소외 1 회사가 2019. 4. ~ 2019. 6.경 피고에게 제안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가 속한 시리즈 펀드인 ◇◇◇ 펀드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상품이다. 구체적인 투자방법으로는 ◇◇◇ 펀드의 신탁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양도받는 방법(Case 1)과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함께 건설회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도 인수하는 방법(Case 2)이 있다고 소개되었다.

다. 원고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는 2020. 4.경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 펀드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20. 4.

22. 이 사건 펀드가 속한 시리즈 펀드 중 하나인 ◇◇◇ 펀드 제46호(이하 '제46호 펀드'라 한다)의 상품설명서를 받아 투자계획을 검토하였다.

라. 피고 직원 소외 3은 소외 1 회사로부터 펀드 판매 요청을 받아 2020. 4. 23.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 직원 소외 4로부터 그가 작성한 이 사건 펀드 신청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소외 3은 소외 4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나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4. 24.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금 100억 원을 이체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5 은행'이라 한다)에 지급하여, 그 투자금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하여 소외 2를 비롯한 소외 1 회사 관련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모집된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등 판매회사들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3799 판결).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착오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주위적

으로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이 제3자 사기 내지 착오 등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부당권유 내지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운용자산에 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될 것이라 착오하였고 이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며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이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나, 원고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착오 취소와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고, 이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시리즈 펀드에 속하는 제46호 펀드의 상품설명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에 관하여 불충분하게나마 검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원고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펀드와 제46호 펀드의 각 상품설명서에 각 투자대상과 그 비율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인 원고로서는 판매회사인 피고로부터 자산운용회사인 소외 1 회사가 제1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기 마련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 15996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다르지 아니하다.

더구나 원고는 에너지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입업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펀드 및 그와 시리즈 펀드인 다수의 ◇◇◇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일 뿐만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에 관하여 착오하게 된 것은 제46호 펀드의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피고 직원의 설명을 신뢰함에 따른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하여 ◇◇◇ 펀드를 설정·운용한 소외 1 회사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 제46호 펀드와 이 사건 펀드의 상품설명서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상품설명서 교부를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펀드를 설정·운용한 소외 1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실제 투자대상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신탁업자인 소외 5 은행에게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에 납입되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이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반복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판단 잘못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나. 제3자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제3자인 소외 1 회사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분

1)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행위가 투자권유행위로서 원고의 투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구 자본시장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 2호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투자권유 및 부당권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펀드 또는 제46호 펀드의 상품설명서에는 소외 1 회사가 제안한 내용 그 자체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의문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소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펀드의 구조나 투자대상, 위험 요소, 이익 실현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과 원고의 투자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나 투자중개업자의 행위와 투자자의 투자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책임제한의 적정성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

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 1124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면서 투자 적합성과 위험성에 대한 검토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의 모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나온 협의가 원고의 이 사건 펀드 가입의 계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투자 손실의 책임을 피고에게 전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충분하게나마 검토를 거쳤고,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하는 설명을 신뢰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펀드의 설정·운용자인 소외 1 회사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펀드의 운용재산에 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보았듯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된 감액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의 책임이 과소하게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동시이행항변의 인정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